



가 정 통 신 문
KYEONGBUK MIDDLE SCHOOL

담당자

교육행정실 김명화
(070-4348-5159)

행정실 : 544-1815

제 목

제27기 경북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

학부모선관위 제2023-1호

경북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7기 경북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지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장 소 : 경북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1층 행정실)

다. 기 간 : **2023. 3. 9.(목) ~ 3. 13.(월)(09:00~16:00)** (3일간)

라. 구비서류 : **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(뒷면 활용)**

2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 : 2023. 3. 16(목), 16:00 ~ 20:00

나. 선거장소 : 경북중학교 송린관(도서관)
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3명

마. 소견발표 : 학교홈페이지에 간단한 이력 공지예정
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3. 3. 14.(화)~3.15.(수)(1층 교육행정실)

※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이어서 무투표당선으로 확정된 경우, 선거인 명부 작성 생략

3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3년 3월 6일

경북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